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4(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산업과장 양 정 회

나. 폐 지 사 유

ㅇ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'96. 8. 8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ㅇ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ㅇ '96. 8. 8 법률 제5153호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업무가 개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에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재의미 없어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75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4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시행('94. 1. 1부터 시행)으로 규모이하제분업신고에관한규정(양곡관리법 제16조 1항)이 삭제되어 폐지코자 함.

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